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7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송재봉・박홍배・김 현

박수현・김 윤・권향엽

정진욱 • 양부남 • 문금주

박희승 • 윤건영 • 이광희

김주영 · 강준현 · 문정복

민형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 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 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 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제3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종"을 "국적, 인종"으로 한다.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육 이념) ①・② (생	제3조(보육 이념)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	③		
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			
분, 재산, 장애, <u>인종</u> 및 출생지	<u>국적, 인종</u>		
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			
어야 한다.			
<u> <신 설></u>	제34조의8(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		
	민 또는 외국인에게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		
	<u>할 수 있다.</u>		